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팀장 김은영)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및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와 자살예방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내용 및 용어 변경

나.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비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위원회 운영시 현실과 맞지않는 내용이 있어 삭제

다.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

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단어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기초하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내용과 문구를 일치시키고,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범위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범위 등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살예방센터의 운영범위 확대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추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김미영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의료봉사요원에게 지급되는 실비에 관한 지급 근거와 의료봉사의 구체적 범위를 명문화하여 입법의 공백을 해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나아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의료봉사요원의 실비에 관한 자치규범을 정립하였다는데 그 제정의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의료봉사의 범위 (안 제3조)
- 일당의 구체적 산정 기준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의료인이 각종 의료봉사를 함에 있어 이에 대한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장기적으로 민간 의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의료봉사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 의료봉사인들에 대한 일당 및 여비 등 비용산정의 기준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전성균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성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나아가 개정의 기회에 기존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하였음.

나. 주요내용

- 시 자체 사업으로 체육복 지급 시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 2023년도 입학생 소급 지원 근거 마련 (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에 기입학한 중고등학생들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소급적용을 가능케 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경우 별도의 지원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더 많은 가정들의 교육비 부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되는 재정부담의 적정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체육진흥과장 정지영)

가. 제안이유

- 화성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화성시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스포츠데이 지정(안 제3조)

라.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마. 스포츠데이 사업 추진 등(안 제5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사.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안 제7조)

아. 사무의 위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장려를 위하여 매월 1회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로 하는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정기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스포츠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 정기적인 체육시설 이용료의 면제로 인한 일부 수익저하 및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적지 않은 예산의 수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이용운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용운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문호를 장애인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장애인 선수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 선수에게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어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 하려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만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될 수 있었던 사항을 개정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장애인 단원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 검토결과,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는 체육에 대한 접근권 및 평등권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이해남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안번호: 제2019 -359호)안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정법인으로 출범한 화성시체육회의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려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 (안 제2조제4호)
- 업무보고명령, 정기적인 지도·감독 (안 제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체육회와 화성시 장애인체육회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각종 용어를 재정비하였으며, 체육단체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권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권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 본 조례안을 통하여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화성시 체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관내 체육단체들의 내실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이해남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축제추진 위원회에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더하고 공동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체제를 도입하는 등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려는데 개정 취지가 있음.
- 나아가 개정의 기회에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에 필수적인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하였음.

나. 주요내용

-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제1항)
-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안 제3조제2항)
- 대표·축제행사 대상 (안 제13조)
- 안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축제 진행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장의 평가의무 등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 각종 크고 작은 축제가 존재함에도 화성시의 대표축제로 명명할 수 있는 축제가 현재까지 부재함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대표축제의 수월한 선정과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화성시 축제의 브랜드화와 콘텐츠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문화유산과장 김령희)

가. 제안이유

- 4.15 추모제 추진위원회 조례 내용에 고주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금번 개정을 통해 고주리를 포함시켜 향후 독립유공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행사를 지속 및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비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제3항~제5항)
-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 정비 (조례 전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뿐만 아니라 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불의한 침탈에 항거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후세에도 잊히거나 희미해지지 않도록 추모제의 의미와 범위를 확립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신현주)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공헌,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 (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 보훈 명예수당 나이 기준 삭제 (안 제8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령별 차등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월정 수당을 증액함과 동시에, 사망위로금 또한 기존에 비해 2배가량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시 재정부담에 관련된 사항 또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전성균 의원 등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성균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수립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열거함 (안 제7조)
-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친족 또는 동거인 없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및 지원 시설에 대한 사항을 특정하여, 장기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우울증 극복 또는 사회적 도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가족형태의 분화에 발맞추어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과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전성균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성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더하여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이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입안의 기본 목적이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
(안 제5조제1항제7호)
- 호스피스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명문화 (안 제7조)
- 호스피스의 날 제정 (안 제8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 향후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생명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전성균 의원 등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성균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변경하여 청년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상한을 만 39세로 변경하여, 각종 청년정책 및 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로서,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5개의 시·군에서도 청년 연령을 39세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청년에 대한 연령적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2. 7. 위영란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위영란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관내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통합사례관리에 기반한 전문적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음.
- 나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사무에 관한 입법의 공백을 해소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 시의 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데 제정의 뜻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 위기지원서비스 등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의 일환으로 관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분소를 설치하고 사업비용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사항으로서,

-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개소당 담당 노인인구가 현저히 많아 향후 분소를 설치할 경우 긴급상황 대비에 용이하고 취약·위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나, 분소의 적정 개수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